

의안번호	2201609
의 퇴 인	정준호의원
회 답 일	2024.08.13.
추계번호	24A177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형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을 100의 50까지 추가 지원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117억원, 2030년 3,146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조 8,079억원(연평균 3,615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4,117	3,849	3,599	3,365	3,146	18,079	3,615
	국비	2,055	1,922	1,797	1,680	1,571	9,027	1,805
	지방비	2,061	1,927	1,802	1,685	1,575	9,051	1,810

- 주. 1. 소형 전기자동차 대수 및 보조금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 <u>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u> -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중 <u>소형 자동차¹⁾</u>로서 전기자동차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매가격 간 차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u>보조금의 100의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음(제1호 신설)</u>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제2호 신설) -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호 신설) •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신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1	안 제10조제1항제1호 신설 (소형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의 100의 50까지 추가 지원)	○
2	안 제10조제1항제2호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 안 제10조제1항제2호는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²⁾ 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는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에 해당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소형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의 100의 50까지 추가 지원(안 제10조제1항제1호 신설)

- 안 제10조제1항제1호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형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 대비 정률로 100의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행될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1) 「자동차관리법」 제3조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자동차의 종류 중 승용자동차(소형)

-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 현재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비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³⁾에 따른 환경부의 무공해차보급사업이 있음

[표 2] 환경부의 무공해차보급사업 예산 현황: 2022~2024년

(단위: 백만원)

		2022년	2023년	2024년
세부사업	무공해차보급사업 (1633-311)	2,182,766	2,565,224	2,398,754
내역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1,719,000	1,918,000	1,764,000

주: '전기자동차 보급'의 사업 목적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 전기승합(버스), 전기이륜차 구매 자금 지원
자료: 환경부,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024.1.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소형 전기자동차의 보조금 대비 정률로 100의 50까지 추가 지원할 경우 확대될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이며, 추계 방법은 향후 5년간의 소형 전기자동차 예상 보급대수에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 단가의 50%를 곱하여 산출

3)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의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 또는 건설기계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연료공급시설

가. 국비보조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⁴⁾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국비보조금은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른 보조금을 매년 차종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음⁵⁾. 현 시점에서 향후 5년간 전기자동차의 차종별 보급대수를 예측하기가 곤란하므로 본 추계에서는 국산차와 수입차를 나누어서 보조금 규모를 산출함

□ (보급대수) 향후 5년간 소형 전기자동차의 보급대수는 2023년 대비 매년 6.5%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환경부의 소형 전기자동차 보급계획물량 대비 실제 보급 대수는 [표 3]과 같음. 2021년부터 보급목표 달성률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⁶⁾이며, 2022년(123,920대) 대비 2023년(115,817대)의 보급 대수는 6.5% 감소하였음

[표 3] 최근 5년간 소형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2019~2023년

(단위: 대, %)

구분	연도	보급계획물량(A)	보급대수(B)	달성률(B/A)
소형 전기자동차	2019	43,480	33,423	76.9
	2020	41,567	31,329	75.4
	2021	71,419	71,517	100.1
	2022	162,486	123,920	76.3
	2023	215,200	115,817	53.8
	2024	233,000	—	—

자료: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용자기준) 법 제58조제3항제1호 후단에서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저공해자동차

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판매자"라 한다)로부터의 구매 여부
나. 판매가격

다. 연비, 주행거리 등 성능

라. 자동차판매자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달성 실적

마. 자동차 배터리의 재활용가치(킬로그램당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또는 알루미늄의 포함 정도를 말한다)

바. 그 밖에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2. 저공해건설기계

가. 판매가격

나. 연비, 작업량 등 성능

다. 그 밖에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5) [참고자료 1] 참조

6) 100.1%(2021년) → 76.3%(2022년) → 53.8%(2023년)

□ (국산차 대비 수입차 비율) 향후 5년간 국산차 대비 수입차 비율이 2:1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인 최근 2년간 국산차 및 수입차의 소형 전기자동차 등록대수에 의하면 국산차 대비 수입차 비율은 1.94 대 1⁷⁾임

[표 4] 최근 2년간 소형 전기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2022~2023년

(단위: 대)

	2022년	2023년	합 계
국산 소형 전기자동차	85,515	72,707	158,222
수입 소형 전기자동차	38,405	43,110	81,515
합 계	123,920	115,817	239,737

주. 1. 국산차: 현대, 기아, KG모빌리티

2. 수입차: BMW, 테슬라, 벤츠, 스텔란티스(푸조), 아우디폭스바겐, 폴스타오토모티브, 볼보, 토요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 향후 5년간 소형 전기자동차의 보급대수가 2023년 대비 매년 6.5% 감소하고 국산차 대비 수입차 비율이 2:1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국산 및 수입 소형 전기자동차의 보급대수 추정치는 다음과 같음

[표 5] 향후 5년간 국산 및 수입 소형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추정치: 2026~2030년

(단위: 대)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국산 소형 전기자동차	63,113	59,010	55,175	51,588	48,235
수입 소형 전기자동차	31,556	29,505	27,587	25,794	24,118
합 계	94,669	88,515	82,762	77,382	72,35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국비보조금 단가) 2024년도 소형 전기자동차 국비보조금⁸⁾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

- 국산차 국비보조금 평균 단가의 50%인 258.5만원⁹⁾
- 수입차 국비보조금 평균 단가의 50%인 134.5만원¹⁰⁾
- 이때, 국비보조금 단가는 향후 5년간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7) 158,222대 : 81,515대

8) [참고자료 1] 참조

9) 517만원×50%

10) 269만원×50%

- 소형 전기자동차의 국비보조금을 100의 50까지 추가 지원할 경우, 확대될 국비보조금의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9,027억 2,000만원(연평균 1,805억 4,400만원)으로 추계

[표 6] 소형 전기자동차 국비보조금 50% 확대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국산	소형 전기자동차 수(A, 대)	63,113	59,010	55,175	51,588	48,235	277,121
	국비보조금 단가(B, 만원/대)	258.5	258.5	258.5	258.5	258.5	-
	합 계(C=A×B, 백만원)	163,147	152,540	142,627	133,354	124,687	716,357
수입	소형 전기자동차 수(D, 대)	31,556	29,505	27,587	25,794	24,118	138,560
	국비보조금 단가(E, 만원/대)	134.5	134.5	134.5	134.5	134.5	-
	합 계(F=D×E, 백만원)	42,442	39,684	37,104	34,692	32,438	186,363
추가재정소요(G=C+F, 백만원)		205,590	192,225	179,732	168,047	157,126	902,720

주: 소형 전기자동차 대수 및 국비보조금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

나. 지방비보조금

-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시·도별 전기자동차 보급대수에 시·도별 지방비보조금 단가의 50%를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시·도별 보급대수) 향후 5년간 소형 전기자동차의 보급대수는 2023년¹¹⁾ 대비 매년 6.5%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시·도별 등록 비율은 [표 8]의 시·도별 전기자동차 등록 비율(2023년도)과 같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11) 115,817대

[표 7] 향후 5년간 소형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추정치: 2026~2030년

(단위: 대)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94,669	88,515	82,762	77,382	72,35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8] 2023년도 시·도별 전기자동차 등록 현황

연번	지방자치단체명	신규 등록 대수(대)	비율(%)
1	서울특별시	16,521	10.2
2	부산광역시	12,136	7.5
3	대구광역시	7,017	4.3
4	인천광역시	15,251	9.4
5	광주광역시	3,523	2.2
6	대전광역시	4,165	2.6
7	울산광역시	2,802	1.7
8	세종특별자치시	1,077	0.7
9	경기도	35,446	21.8
10	강원특별자치도	4,555	2.8
11	충청북도	5,852	3.6
12	충청남도	7,885	4.8
13	전라북도	7,441	4.6
14	전라남도	9,051	5.6
15	경상북도	8,236	5.1
16	경상남도	13,866	8.5
17	제주특별자치도	7,815	4.8
합 계		162,639	100.0

주. 승용, 승합, 화물 등의 모든 전기자동차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표 9] 향후 5년간 시·도별 소형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추정치: 2026~2030년

(단위: 대)

연번	지방자치단체명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1	서울특별시	9,618	8,992	8,407	7,862	7,349	42,228
2	부산광역시	7,065	6,606	6,176	5,774	5,398	31,019
3	대구광역시	4,084	3,819	3,571	3,339	3,122	17,935
4	인천광역시	8,877	8,300	7,761	7,256	6,785	38,979
5	광주광역시	2,051	1,917	1,793	1,676	1,567	9,004
6	대전광역시	2,424	2,267	2,119	1,982	1,853	10,645
7	울산광역시	1,631	1,525	1,426	1,333	1,247	7,162
8	세종특별자치시	627	586	548	512	479	2,752
9	경기도	20,632	19,291	18,037	16,865	15,769	90,594
10	강원특별자치도	2,651	2,479	2,318	2,167	2,026	11,641
11	충청북도	3,406	3,185	2,978	2,784	2,603	14,956
12	충청남도	4,590	4,291	4,012	3,752	3,508	20,153
13	전라북도	4,331	4,050	3,786	3,540	3,310	19,017
14	전라남도	5,268	4,926	4,606	4,306	4,027	23,133
15	경상북도	4,794	4,482	4,191	3,919	3,664	21,050
16	경상남도	8,071	7,546	7,056	6,597	6,169	35,439
17	제주특별자치도	4,549	4,253	3,977	3,718	3,477	19,974
합계		94,669	88,515	82,762	77,382	72,353	415,68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지방비보조금 단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전기자동차의 2024년도 보조금 단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며,¹²⁾ 향후 5년간 보조금 단가는 2024년도 단가의 50%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이때, 시·군·구별로 보조금 단가가 상이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2024년도 보조금 단가의 평균값¹³⁾의 50%로 가정

12) [참고자료 2] 참조

13) 경기도: 300만원, 강원특별자치도: 269만원, 전라남도: 725만원, 경상북도: 850만원, 경상남도: 853만원

[표 10] 2024년도 시·도별 지방비보조금 단가의 50%

(단위: 만원)

연번	지방자치단체명	단가
1	서울특별시	75
2	부산광역시	125
3	대구광역시	150
4	인천광역시	150
5	광주광역시	185
6	대전광역시	150
7	울산광역시	162.5
8	세종특별자치시	125
9	경기도	150
10	강원특별자치도	134.5
11	충청북도	325
12	충청남도	350
13	전라북도	350
14	전라남도	362.5
15	경상북도	425
16	경상남도	426.5
17	제주특별자치도	200

주. 무공해차통합누리집(ev.or.kr) 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소형 전기자동차의 지방비보조금을 100의 50까지 추가 지원할 경우, 확대될 지방비보조금의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9,051억 8,400만원(연평균 1,810억 3,680만원)으로 추계

[표 11] 소형 전기자동차 지방비보조금 50% 확대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가: 백만원)

연번	지방자치단체명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1	서울특별시	7,213	6,744	6,305	5,896	5,511	31,671
2	부산광역시	8,831	8,257	7,720	7,217	6,747	38,773
3	대구광역시	6,126	5,728	5,356	5,008	4,683	26,902
4	인천광역시	13,315	12,450	11,641	10,884	10,177	58,468
5	광주광역시	3,794	3,546	3,317	3,100	2,898	16,657
6	대전광역시	3,636	3,400	3,178	2,973	2,779	15,967
7	울산광역시	2,650	2,478	2,317	2,166	2,026	11,638
8	세종특별자치시	783	732	685	640	598	3,440
9	경기도	30,948	28,936	27,055	25,297	23,653	135,891
10	강원특별자치도	3,565	3,334	3,117	2,914	2,725	15,657
11	충청북도	11,069	10,351	9,678	9,048	8,460	48,607
12	충청남도	16,065	15,018	14,042	13,132	12,278	70,535
13	전라북도	15,158	14,175	13,251	12,390	11,585	66,559
14	전라남도	19,096	17,856	16,696	15,609	14,560	83,857
15	경상북도	20,374	19,048	17,811	16,655	15,572	89,462
16	경상남도	34,422	32,183	30,093	28,136	26,310	151,147
17	제주특별자치도	9,098	8,506	7,954	7,436	6,954	39,948
추가재정소요(백만원)		206,149	192,748	180,222	168,505	157,559	905,184

주. 소형 전기자동차 대수 및 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 결과,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형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을 100의 50까지 추가 지원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117억원, 2030년 3,146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조 8,079억원(연평균 3,615억원)으로 추계됨

[표 1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4,117	3,849	3,599	3,365	3,146	18,079	3,615
	국비	2,055	1,922	1,797	1,680	1,571	9,027	1,805
	지방비	2,061	1,927	1,802	1,685	1,575	9,051	1,810

주. 1. 소형 전기자동차 대수 및 보조금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참고자료 1] 2024년도 소형전기차 차종별 구매보조금(국비) 단가

* [참고자료 2]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전기차 보조금 단가(승용 기준)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지수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3735	zisu37@nabo.go.kr

[참고자료 1] 2024년도 소형전기차 차종별 구매보조금(국비) 단가¹⁴⁾

제조 수입사	차종	국비보조금 (만원)
현대자동차	Electrified G80 AWD 19인치	310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325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310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300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285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295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31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65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65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633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633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605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591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567
	아이오닉6 스탠다드 2WD 18인치	645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650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20인치	650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인치	650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20인치	631
	코나 일렉트릭 2WD 스탠다드 17인치	561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619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9인치	569
	아이오닉5 N	280
	더뉴아이오닉5 2WD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650
	더뉴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650
	더뉴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643
	더뉴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624
	더뉴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636
	더뉴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611
	더뉴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611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621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628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606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629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629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595
	니로 플러스(DP)	592

14) 한국환경공단 제출자료

	The all-new Kia Niro EV	580
	EV6 GT	267
	EV9 2WD 19인치	301
	EV9 2WD 20인치	298
	EV9 4WD 19인치	287
	EV9 4WD 21인치	291
	EV9 GTL 4WD 21인치	286
국산 소형 전기차 보조금 평균 단가		517
BMW	iX3 M Sport	205
	i4 eDrive40	212
	i4 M50	198
	iX1 xDrive30	184
테슬라코리아	Model Y RWD(2023)	210
	Model 3 RWD	226
	Model 3 Long Range	235
	Model Y RWD	211
	Model Y Long Range	227
	Model Y Performance	231
	Model 3 Performance(2024)	227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EQB300 4MATIC(5인승)	217
	EQB300 4MATIC(7인승)	217
스텔란티스코리아	Peugeot e-208	349
	Peugeot e-2008 SUV	331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폭스바겐 ID.4 Pro	492
	아우디 Q4 40 e-tron	196
	아우디 Q4 Sportback 40 e-tron	198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EVX 2WD 18인치	457
	토레스 EVX 2WD 20인치	443
	코란도 EV 2WD	399
폴스타오토모티브코 리아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MY23)	409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MY23)	163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MY24)	439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MY24)	186
볼보자동차코리아	볼보 C40 Recharge Twin	201
	볼보 XC40 Recharge Twin	192
한국토요타자동차	렉서스 RZ450e	276
수입 소형 전기차 보조금 평균 단가		269

[참고자료 2]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전기차 보조금 단가(승용 기준)¹⁵⁾

(단위: 만원)

연번	지방자치단체명	지원금
1	서울특별시	150
2	부산광역시	250
3	대구광역시	300
4	인천광역시	300
5	광주광역시	370
6	대전광역시	300
7	울산광역시	325
8	세종특별자치시	250
9	경기도	200~400
10	강원특별자치도	251~288
11	충청북도	650
12	충청남도	700
13	전라북도	700
14	전라남도	600~850
15	경상북도	600~1,100
16	경상남도	566~1,140
17	제주특별자치도	400

15) 무공해차통합누리집(ev.or.kr)